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훈련강사의 능력개발 지원 근거 마련과 동시에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술교육대학이 보수교육 의무 주기에 따른 이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진단 및 상담이 지원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부정훈련기관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표 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계좌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진단 및 상담이 지원되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 개정).

- 나.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능력개발 대상자를 훈련강사까지 확대하고, 보수교육의 주기·시간, 분야, 보수교육 참여 대상자의 보호, 보수교육 이수 결과의 심사·평가 반영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9조 개정 및 제29조의2 신설).
- 다. 계속교육 의지가 강한 졸업 직후 입직 노동자들이 심화된 직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을 완화하고, 졸업연도에 입직한 노동자도 차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산업체 근무경력 조건을 완화함(안 제39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신설).
- 라. 부정훈련기관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 공표 내용 및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제52조제4항 개정).
- 마. 기술교육대학이 보수교육 의무 주기에 따른 이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52조의2제3항 신설).
- 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경우”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2

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1. 교육훈련사업(보수교육 등 직무능력향상훈련 포함)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전공분야 보수교육

2. 교수학습기법 등 교직분야 보수교육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매 해마다 다시 기산한다)에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과정에 대한 심사 등에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소속 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졸업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명단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훈련기관의 명칭·주소
3. 대표자의 성명 및 나이(훈련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를 말한다)
4. 위반 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6.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처분 내역(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명단 공표 대상자를 관보에 실거나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및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 홈페이지,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제50조의3(공표기준일) 법 제56조의2제1항의 “공표 기준일”은 공표하고

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50조의4(명단 공표 기준 부정수급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 원을 말한다.

제50조의5(명단 공표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결정 사실, 공표 내용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56조의2 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한 사실관계의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결과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제4항 중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56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에
관한 업무

제5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의 1. 일반기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1년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 시간 산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단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 공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등의 공표)에 따라 귀사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훈련기관의 명칭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훈련기관의 주소			
위반내역			
행정처분의 내용			
명단 공표 기준일(년 월 일) 이전 3년간의 위탁계약 해지 및 인정취소 내역			
명단 공표 내용 및 소명 기한			
명단 공표 예정일	년 월 일		
명단 공표 방법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기술교육대학 홈페이지		
소명 기한	년 월 일		

만약 귀하(귀사)께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따라 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조의2(명단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훈련기관의 명칭·주소

3. 대표자의 성명 및 나이(훈련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를 말한다)

4. 위반 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6.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처분 내역(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명단 공표 대상자를 관보에 실거나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및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조의3(공표기준일)** 법 제56조의2제1항의 “공표 기준일”은 공표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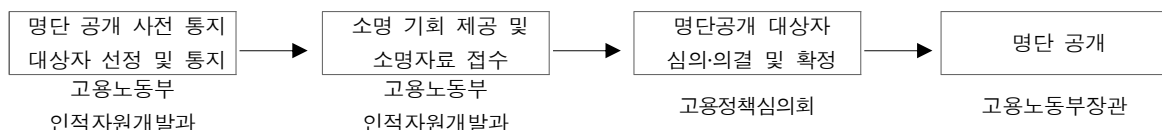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조의4(명단 공표 기준 부정수금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 원을 말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조의5(명단 공표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결정 사실, 공표 내용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56조의2 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한 사실관계의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결의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생략) <u><신설></u>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 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 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 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제 공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직 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 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 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 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③ ----- <u>계좌적합훈 련과정</u> ----- ----- ----- ----- ----- ----- ----- ----- ----- ----- --- <u>경우</u> ----- -----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 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 4. (생략)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① -----
----- 직업
능력개발훈련교사등-----

-----.

1. 교육훈련사업(보수교육 등 직무능력향상훈련 포함)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7조제3항-----

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전공분야 보수교육

2. 교수학습기법 등 교직원분야 보수교육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은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매 해마다 다시 기산한다)에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과정에 대한 심사 등에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법 제40조의2 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육을 받는데 있어서 소속 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

② (생략)

<신설>

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졸업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명단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훈련기관의 명칭·주소

3. 대표자의 성명 및 나이(훈련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를 말한다)

4. 위반 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6.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처분 내역

	<u>(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u> <u>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명단 공표 대상자를 관보에 실거나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및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 홈페이지,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u>
<u><신 설></u>	<u>제50조의3(공표기준일) 법 제56조의2제1항의 “공표 기준일”은 공표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u>
<u><신 설></u>	<u>제50조의4(명단 공표 기준 부정수금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 원을 말한다.</u>
<u><신 설></u>	<u>제50조의5(명단 공표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결정 사실, 공표 내용 등을 서면으</u>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52조

로 사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56조의2 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한 사실관계의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결과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음 각 호의 -----

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② (생략)

<신 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 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56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에 관한 업무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은 법 제37조제2
항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82